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79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4. 16.

다. 회 부 일 : 2025. 4. 23.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1894년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를 들고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 아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가 된 민중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획을 그은 사건이다.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

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개헌을 통해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한반도 역사 속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

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임.

동학농민혁명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음.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한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웠음.

이에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Ⅲ.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국회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 먼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3·1운동은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전문에 포함되었고, 4·19민주화운동 이념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음.
- 동학농민혁명은 198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¹⁾으로서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 ‘동학농민혁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음. 이 같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가치를 볼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촉구한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전북 정읍시(의회)는 2017년 국무총리실 등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전북도지사의 제안으로 2020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²⁾, 현재까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등이 계속되고 있음

○ 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가치를 볼 때 헌법 전문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헌법 전문에 포함할 지 여부는 국민적 합의 및 국회 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이후 6·10 민주항쟁

2) [분권레터]21대 국회에 바라는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성명서 발표 2020.6.10.,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8/view.do?nttId=12644&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200088&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1>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으로 승화되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울 수 있게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고려할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과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이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계승하겠다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2024년 국회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⁴⁾.

- 관련하여 본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2020년 6월10일 발의되었는데, 국회법 제37조제2장 및 제8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우원식 국회의장 브리핑<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6.14.

위하여 2020년7월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안건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안건의 소관부처는 국가보훈부임.

문 의 처
02)6788-5384